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진주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2월 24일

진주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3. 9.(월) ~ 3. 27.(금) ※ 1월분부터 소급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인원 : 74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임차(월세) 청년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이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 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8년(1986.1.1.~2008.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진주시 진주시 내 주택에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동일세대 1명 지원)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60%/100%/150%)】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중위소득 (60%)	1,538,542	2,519,575	3,215,421	3,896,842	4,534,031	5,133,571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중위소득 (150%)	3,846,357	6,298,938	8,038,554	9,742,107	11,335,078	12,833,928	

※ 청년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직장 (지역) 가입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시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인정 (아르바이트, 임시근로는 소득 미인정)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를 기준으로 함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⑥)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세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등

⑤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⑥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3. 9.(월) ~ 3. 27.(금)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방문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경남바로서비스란, 진주시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신청서류	발행처						
①	신청서【서식 1】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위임서류【서식 3】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2】 ※ 소득조회대상 가구원 모두의 서명 필요하므로 가구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신용정보조회서 ※ 대출금액,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정보 가려서 제출 가능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 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						
⑤	건강보험 관련 서류 ※ 가구 상황에 따라 신청서류 상이 ※ 다음 페이지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참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소득 있는 미혼 청년</th> <th style="width: 33%;">소득 없는 미혼 청년</th> <th style="width: 33%;">기혼 청년</th> </tr> </thead> <tbody> <tr> <td> 본인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td> <td>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td> <td> 본인, 배우자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td> </tr> </tbody> </table>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피부양자 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2025년 기준 발급	소득 있는 미혼 청년	소득 없는 미혼 청년	기혼 청년	본인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 배우자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소득 있는 미혼 청년	소득 없는 미혼 청년	기혼 청년						
본인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 배우자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 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하여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https://www.gov.kr)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 주민등록번호(13자리) 포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⑧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청년 본인 및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 각각 발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발급 시 필수 선택사항 】 ※ 반드시 아래 사항대로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관할 자치단체 : 경남 진주시, 전체(전국) 체크 2. 과세연도 : 2025년 ~ 2025년 3. 세목 : 재산세(주택) ※ 다른 세목 선택금지 </div>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징수과, 위택스 (www.wetax.go.kr)						

4. 추진일정

신청·접수 (경남바로서비스, 읍면동)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오프라인(읍면동) 3. 9.~ 3. 27.	소득재산조사 (주택경관과) 차세대 행복e음 활용 3.28.~4.30.	지급대상결정 (주택경관과) 선정자에게 SMS 등 통보 4~5월 중	월세 지급 (주택경관과) 매월 25일 ('26.1월분 부터 소급) '26.1.~12. (12개월분)	사후관리 (주택경관과, 읍면동)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4월 ~ 12월
---	---	---	--	---

5. 심사 및 선정

(1차) 서류심사 : 신청 대상자 제출 서류 확인, 자격 적합 유무 판단

(2차)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74명 최종 선정

※ 세부심사 : 소득 기준(60점), 임대료 기준(40점)

평가항목	구간	배점	평가항목	구간	배점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60	임대료기준 [보증금+(월세 *100)]	3천만원 이하	40
	70% 이하	50		5천만원 이하	30
	80% 이하	40		8천만원 이하	20
	100% 이하	30		8천만원 초과	10
	120% 이하	20			
	150% 이하	10			

*동점일 경우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선정

- * 대상자 선정 통보 : 개별 알림톡 발송
- * 추후 예산범위 내 대상자 추가 선정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본 공고대상인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아래 주소)를 통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주소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구분(2026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시→계속사업 전환)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량	2,193명	74명
지원 대상	연령기준	19세 ~ 34세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 *청약저축 가입 요건 삭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
	주택기준	- (삭제)
지원내용	월세 최대 20만 원(최대 24개월)	월세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
추진계획	2026. 3.~5.: 신규신청 2026. 3.~9.: 대상자 심사 및 선정 2026. 9.~12.: 매월 지원금 지급(5월분부터 소급) ※ 2026. 5.~7.: 매년 재심사(전년도)	2026. 2.~ 3.: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2026. 4.: 대상자 심사 및 선정 2026. 4.~ 12.: 매월 지원금 지급(1월분부터 소급)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2026년도는 시스템 구축으로 3월말부터 복지로 신청가능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2022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부터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 매월 10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서식4)를 제출
-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서식5)를 제출
-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055-749-8941) 및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월세지원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앞면)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직업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취업준비생 등 <input type="checkbox"/> 직장인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전자우편
	주민등록상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본인				
임대차계약사항	전세금 및 월 임대료	보증금 금 _____ 원 임대료 매월 금 _____ 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부일 매월 _____ 일 임대료 납입방법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신청인과 계약자는 동일하여야 함			
	부동산 소재지				
	임대인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제3자 <input type="checkbox"/> 부모·형제·자매(외)조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			
	계약기간	20 . . . ~ 20 . . . (개월)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원룸,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다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산정보 제공동의자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 동의 필요)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	
				-	
지원금 입금계좌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_____) / (금융기관: _____)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작성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소득 및 재산현황 (가구원 전체)	소득 및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자동차 등) 공적자료로 반영함을 알려드리며 공적자료와 상이할 경우 추후 이의신청을 통하여 본인 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적합 여부 판단하여 반영 가능				
중복지원 불가사업	아래의 사업대상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				
본인(대리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 동의	

※ 건강보험 피부양자(학생, 취업준비생 등) 등은 소득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부모(부양자)의 동의가 필요함.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2026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4】 <지원대상자 선정 시> ※ 월세 선 납부 후 매월 10일까지 제출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임차료 지급 신청서 (2026. 월분)

■ 납부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납 부 자 (송금한 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기타(납부자와의 관계 :)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 임차료 납부내역

납 부 일 (이체일자)	2026. . .		
총 납부금액	원		
받 는 사 람 (임 대 인)	성명 :	계좌번호 :	(은행명)
납 부 방 법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요청 금액
			원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임차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붙임 : 입금내역 증빙서류(계좌 변경 시 통장사본 제출) 1부.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 중지 신청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핸드폰)

■ 사업참여 중지사유(해당사항에 ○ 체크하세요)

-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지원기준이 아닐 경우 ()
- 연속하여 2회 이상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
- 기 타 (사 유 :)

2026 년 월 일

위와 같이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참여 중지를 신청합니다.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④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https://youngjinju.go.kr/young/login>)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④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방문접수(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방문 신청·접수 시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접수할 수 있나요?

- ④ 임대차계약자(임차인) 본인의 신청이 원칙이나,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관계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 가능한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④ 사업 신청이 가능한 청년의 나이는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의 나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다만, 청년의 나이는 시·군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조례와 시·군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실제 거주는 진주, 주민등록은 부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④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⑥ 친구와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④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⑦ 청년 2명이 임대차 계약 시 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④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분담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⑧ 2021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2026년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 ㉠ 2021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2025년도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생애 1회 지원기준이 적용되어 2022년 ~ 2025년도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2026년 사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⑨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 월세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⑩ 신청가능한 주택유형은 어떻게 되며,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 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신청 가능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용도, 전입신고 여부,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주시에서 인정할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⑪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소유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 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분양권 소지자,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의 경우 현재 살 수 있는 주택이 아니며, 주택의 입주에 필요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판단됨
- 생계·의료·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교육급여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지원 가능함
- 청년 구직활동 수당,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받는 청년의 경우 직접적인 주거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 가능함

⑫ 주택소유를 판단할 때 세대원도 해당되나요?

- ㉠ 신청인 세대 내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를 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주, 세대원 모두 확인 필요)

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도 및 시·군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세어하우스 등) 등

⑭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소득·재산 등을 평가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⑮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재산기준 별도 있음)에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동안 매월 주거비(월세)를 분할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월세)를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지원' 사업내용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내용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및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에 게시

⑯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⑰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부모님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자격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⑱ 신용정보조회서는 왜 필요하며,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정부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의 금융지원사업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한국신용정보원(<https://www.kcredit.or.kr:1441/>)에서 조회 발급 가능합니다. 제출 시 대출 금액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해 주시고,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⑱ 월세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20만원을 지원하나요?

- ㉠ 월세지원금은 임차인이 실제 지불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므로 실제 지불한 월세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급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⑳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되나요?

- ㉠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계좌입금 방식(본인 명의 계좌)으로 지급됩니다.

㉑ 매월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제출기한(매월 10일)까지 '임차료 지급신청서'와 '임차인(본인)·임대인·월세금액이 표시된 월세 납부영수증(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㉒ 대상자 선정 후 월세를 지급받다가 지급 중지될 수 있나요?

- ㉠ 주택구입, 월세 없는 전세 이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해당 시·군 외 지역으로 전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확인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지급 중지사유에 해당될 시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㉓ '26년도에 12회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27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달리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26년도에 12회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27년도에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나머지 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㉔ '26년도 4월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6년도 1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공고 이후 대상자 선정이 4월 이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26년 1월부터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부한 것이 확인될 경우, 1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한시 특별 지원사업(2022. 8.~2025. 2.) →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급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신청기간	매년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대상자통보	심사 및 선정 후 매년 9월에 일괄 공지(5월분부터 소급 지원)													
신청주체	본인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방문을 통해 개인별 신청												
	대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지원금 신청	유형	<table border="1"> <tr> <th>온라인 신청</th> <th>오프라인 신청</th> </tr> <tr> <td>①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td> <td>①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td> </tr> <tr> <td>②신청서 입력</td> <td>②신청서 작성</td> </tr> <tr> <td colspan="2">③(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매년 3~5월)</td> </tr> <tr> <td colspan="2">④(진주시 생활보장과) 소득재산 조사(매년 3~8월)</td> </tr> <tr> <td colspan="2">⑤(진주시 주택경관과) 지원결정 통보(매년 9월)</td> </tr> </table>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①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①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신청서 입력	②신청서 작성	③(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매년 3~5월)		④(진주시 생활보장과) 소득재산 조사(매년 3~8월)		⑤(진주시 주택경관과) 지원결정 통보(매년 9월)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①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①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신청서 입력	②신청서 작성												
	③(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매년 3~5월)													
④(진주시 생활보장과) 소득재산 조사(매년 3~8월)														
⑤(진주시 주택경관과) 지원결정 통보(매년 9월)														
절차														
지원금	지급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지원	지급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합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기존 월세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 시 월세지원을 중지하며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 재개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지급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뉴스·포스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국민비서, 포털, SNS 등 채널 다각화 •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집중 홍보 													

□ 신청권자

- (온라인 신청) 복지포(<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저축가입 요건 삭제**
-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입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신청지역

- (신규 신청)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변경 신청)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전입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계약서 제출

- ※ 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금액·기간 등)만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청 하여야 함
- ※ 거주 지역, 임대차 계약 내용(임차보증금, 월차임, 계약자 변경 등)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 시 15일 이내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완 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서류제출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지원대상

-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①30세 이상(삭제),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삭제)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삭제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회) 지원
 -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최대 24개월(회)분 지원
 - (신청기간) 매년 3월부터 5월
 - (지원결정 통보) 매년 9월

※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주거안정장학금, 국토부가 기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 불가능(수혜 중인 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현재는 주거안정장학금 측에서 청년월세 수혜 대상자 여부를 확인 중이며, 추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 예정

2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결정 통보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사 1회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 결정
- (청년)주거급여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여부 조사 중인 자가 월세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수급여부 결정·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조사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3 월세 지원금 지급

□ 주택 유형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급

* 주 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기타: 시·군·구가 인정하는 경우

□ 월세 지급

○ (지급일)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에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 변경, 소급지급 등)

○ (기본원칙)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기산하여 소급 지원**

- 지원대상이 (청년)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청년)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월세 지원금 지급**

□ 월세지원의 중지

○ **지원 중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을 재개 가능**

※ 월세지원 중지 사유

-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